

#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8-9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11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위생·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계약기간 만료 됨
- 「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및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최적의 위탁기관을 재선정하고자 함

## 주요내용

### 가. 안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

구 분	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
소 재 지	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(초지동)
시 설 규 모	180㎡(사무실, 소회의실, 상담실, 탕비실)
수 탁 기 관	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
수 탁 기 간	최 초 : 2013. 05. 27. ~ 2015. 12. 31.(2년 6월) 재계약 : 2016. 01. 01. ~ 2018. 12. 31.(3년)
센 터 구 성	17명(센터장1, 기획·운영팀4, 영양팀6, 위생팀6 )
사 업 내 용	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의 식품·영양·위생·교육 등 지원
국비보조사업	800백만원(국비50%, 도비7.5%, 시비42.5%)

### 나. 위탁내용

- 위 탁 명 :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
- 위 탁 기 간 : 3년(2019. 1. 1 ~ 2021. 12. 31.)

- 위 탁 사 무 :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
  -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·안전관리 등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 사업
- 보조금 지원(2019년) : 800,000천원(국비50%, 도비7.5%, 시비42.5%)
- 재위탁 방법 :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

##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「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, 제5조, 제11조

#### 라. 재 위탁의 필요성

-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생·영양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등록급식소 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, 식품관련 전문 인력의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인 어린이식생활개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.
-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시 직영 운영 시 별도의 법인 설립 및 필수 인력 증원 필요
- 안산시 어린이 식생활개선사업의 기반 구축과 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 등 효율적 관리가 가능함

### 3

### 붙임 자료

- 예산조치 : 2019년 본예산 편성예정(국비지원사업)
- 참고사항 : 안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실적